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법(안)*

천 정 응**

- 제 I 부 행정청의 설치 및 프로그램 보조금
 제 1 장 청소년·가정청
 제 2 장 청소년·가정을 위한 주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보조금
 제 3 장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보조금

- (2) 청소년의 복리·보호·건강한 발달 및 사회에서의 적극적 역할은 국가에 필수적이다.
- (3) 청소년은 건강, 주택, 음식, 교육, 생산적 고용의 기회를 갖고 지역사회생활에 책임있게 참여할 준비를 하며 사랑과 존경과 지도를 받을 가치가 있다.
- (4) 청소년은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게 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다 많이 가져야 한다.
- (5) 가정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본조직이고 사회학습의 원천으로써 강화되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IX.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종합서비스법(안)

제 1 조(약칭) 이 법(안)은 “1990년 미국 청소년 종합서비스법”으로 약칭한다.

제 2 조(조사결과) 의회의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은 원초적으로 미국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다.

* Title IX—Coordinated Services for Children, Youth, and Families(약칭 . Young American Act of 1990), 국회문서번호 4151 등 법안은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청소년 정책사업을 종합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의 체계화, 행정의 일원화 및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회의 등을 법제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 수립과 청소년 관계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위해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법안은 전 3부 6장 8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면의 제약으로 제1부에 해당하는 IX-A 행정청의 설치 및 프로그램 보조금 부분 중 제1장 청소년·가정청, 제2장 청소년 가정을 위한 주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보조금, 제3장 가정자원과 지원프로그램 보조금 관계조항을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이 법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이윤구, “미국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외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pp. 3-13.

** 한국청소년연구원 주임연구원

- (6) 사회는 가정이 제 5항에서 말한 역할을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러한 가정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 (7) 연방정부, 주 및 각급 자치단체들은 청소년들이 마음먹은대로 자유롭게 다음 각호에 게기한 사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원할 공동책임을 갖는다.
 - (A) 최상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 (B) 안전하고 적절한 물리적 공간
 - (C) 높은 수준의 교육기회
 - (D) 효과적인 훈련, 견습제도, 지역사회 서비스 기회, 생산적 고용
 - (E) 청소년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지역사회에서의 그들의 이익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시민적·문화적 활동 및 레크레이션 활동
 - (F) 능률적, 종합적이며 이용가능하고 어느정도 실용적인 청소년가정을 포함하는 폭넓은 지역사회 서비스
 - (G) 청소년들의 생활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진정한 참여.

제 I 부 행정청의 설치 및 프로그램 보조금

제11조(약칭) 이 부분은 “1990년 미국청소년법”으로 약칭한다.

제12조(정의)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판무관—“판무관”이라 함은 제 15조에 의해 설치되는 청소년·가정청 판무관을 말한다.

- (2) 회의—“회의”라 함은 제18조(a)에 의해 설치되는 연방 청소년·가정회의를 말한다.
- (3) 비영리—기관, 단체 또는 조직에서 “비영리”라 함은 1개 또는 그 이상의 법인이나 조합이 소유·운영하는 기관, 단체 또는 조직의 순수익이 민간 주주나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한다.
- (4) 장관—“장관”이라 함은 보건후생성장관을 말한다.
- (5) 주—“주”라 함은 콜럼비아 특별구,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구암, 미국령 사모아, 북 마리아나 군도 및 태평양 군도의 신탁통치지역을 포함한다.
- (6) 청소년—“청소년”이라 함은 21세 이전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 1 장 · 청소년·가정청

제15조(청소년·가정청의 설치) (a) 총 칙—청소년·가정청을 보건후생성에 설치한다.

(b) 판무관—

- (1) 설치—제(a)항에 의해 설치된 청소년·가정청의 장은 청소년·가정 판무관으로 한다.
- (2) 임명—판무관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 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6조(판무관의 직무) (a) 총 칙—판무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보건·후생성 내에서 연방정부의 다른 행정부처·기관과 함께 청소년과 가정에 영향을 주는 모든 연방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평가하는 책임을 갖고 청

- 소년과 가정을 위해 이를 효과적, 가시적으로 대변하는 일
- (2) 청소년과 가정의 제반 문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배분
- (3) 청소년과 가정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해 장관을 보좌하는 일
- (4) 이 부분에 의해 허가하는 보조금의 관리
- (5) 청소년과 가정에 관련된 분야의 계획 및 연구의 개발·수행
- (6) 다음 각호에 제기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서비스를 위해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작성과 실행을 도우는 일
- (A) 보건 및 정신건강 서비스
- (B) 주택 및 주거알선
- (C) 교육·훈련 서비스
- (D) 예방보호 서비스
- (E) 양육보호
- (F) 10대 대리부모 사업
- (G) 아동 양호
- (H) 가족부양 및 보호
- (I) 10대 임신모 예방 및 상담
- (J) 청소년과 가정의 지역사회내 폭력 행위 영향에 관한 상담
- (K) 레크레이션 및 자원봉사 기회
- (L) 종합적인 조기 아동 발달
- (7)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하여 주 및 주내의 각급 자치단체에 대해 기술적 지원과 자문협의 제공
- (8) 청소년 복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준비, 출판 및 보급
- (9) 청소년과 가정에 관계하여 다른 연방기관에서 수집하고 있지 않는 통계의 취합
- (10) 연방정부의 모든부처, 기관의 청소년과 가정에 관련한 정보의 수집, 준비, 보급 및 이를 지원하는 활동의 조정
- (11) 청소년과 가정을 위한 기존자원과 가용서비스의 보다 효과적인 사용의 촉진
- (12) 이 법에 의해 수행되는 프로그램과 활동의 개발·운영에 관한 기본정책과 우선순위의 개발·설정
- (13) 광범위한 종합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전국적 서비스망을 설치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계획, 개발하는 연방, 주, 지방기관을 포함하는 공적 조직과 비영리의 사적 조직의 조정 및 지원
- (14) 이 법의 목적과 중점사항에 관련된 정책의 개발·실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제(13)호에 언급한 당국 및 단체관계자 회의의 소집
- (15) 이 법의 목적에 관련된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 평가
- (16)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가정관계요원을 위한 적절한 연수의 실시와 주와 지역사회 기관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보급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
- (b) 자원봉사의 장려—관무관은 이 부분에 의한 행정청의 직무와 역할 및 이 법에 의해 허가된 프로그램과 활동을 실행하는데 있어 실행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이 법의 목적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기관·단체의

권고를 받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연방기관 자문) (a) 총칙—판무관은 이 법의 목적과 실제로 관련되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관리하는 연방기관 또는 부서의 장과 자문·협력한다.

(b) 기관간 협약—판무관은 기관간의 협약을 통해 어느정도 실제적인 상호협력을 촉진한다.

제18조(연방 청소년·가정 회의) (a) 설치—연방 청소년·가정 회의를 설치한다.

(b) 위원의 수—회의는 위원 15인으로 구성한다.

(c) 위원의 임기—각 위원의 임기는 미국법전 제5편에 관계없이 3년으로 한다.

(d) 위원의 임명

(1) 총칙—이 조항에 의한 임명권자는 이 회의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과 자격을 가진 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

(A) 도시 및 농촌의 인구

(B) 청소년, 가정, 조기아동발달, 초·중등 교육, 사업, 노동, 소수민족 및 일반대중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전국적 단체

(2) 위원의 연령—이 조항에 의한 각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위원 중 적어도 1인은 임명 당시 21세 이하이어야 한다.

(3) 임명 제한—이 조항에 의한 임명권자는 연방정부의 관리 또는 직원을 회의의 위원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

(4) 임명권자—제(1)호에 의한 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임명한다.

(A) 대통령이 지명하는 5인

(B) 상원의 여야 원내총무의 추천에 의해 당분간 상원의장이 임명하는 5인

(C) 하원의 여야 원내총무의 추천에 따라 하원의장이 지명하는 5인

(e) 결원—

(1) 결원의 충원—회의의 결원은 당초 임명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충원된다.

(2) 의결권—회의의 결원은 회의의 의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보궐위원의 임기—전임자의 임기만료 이전에 임명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f) 재임명—회의의 각 위원은 재임명될 수 있다.

(g) 임기만료—회의의 각 위원은 그 임기만료된 이후에도 당해 위원의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h) 보수—

(1) 총칙—회의의 각 위원은 여행시기를 포함, 회의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동안 미국법전 영 제5편의 제5332조의 GS 18 등급에 열거된 일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2) 여행비용—회의의 각 위원은 일상업무 지역을 떠나 회의에 관한 일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미국법전 제5편 제5703조에 의해 일용으로 고용되는 공무 종사자에 대해 허가된 수당에 준하는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i) 의장—의장은 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j) 회의의 개최—회의의 의장은 적어도 6

월에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k) 회의의 임무-회의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청소년의 특별한 욕구에 관련한 일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건의 하는 일
- (2) 모든 연방부서와 기관들이 수행 또는 지원하는 연방청소년정책, 프로그램 및 기타활동이 청소년의 생활에 대해 갖는 가치와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당해 정책, 프로그램,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평가하는 일
- (3) 주 및 지방단위에서 청소년과 가정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복을 줄이고 조정하는 정책변화와 프로그램 변경에 관해 대통령, 장관, 판무관, 의회내 관련위원회에 권고하는 일
- (4) 정보의 수집·보급·연구의뢰 및 수행, 연구결과의 출판 및 간행물과 보고서의 발간 등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에 관해 공보하는 일
- (5) 청소년 문제와 욕구의 논의, 공포 및 청소년과 관계되는 정보 획득을 위한 공청회, 워크숍, 기타 회합을 포함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일

(1) 임원-의장은 제(k)항에 제기한 임무수행을 위해 의장을 도울 임원을 임명한다.

(m) 정보와 지원-연방 각 부서와 기관의 장은 제(k)항에 제기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장이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지원할 수 있다.

(n) 보고-(1) 대통령 보고-의장은 1992 회계년도와 그 이후 각 회계년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매년 3월 31일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A) 의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중간보고
- (B) 청소년 및 회의의 관련 정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권고가 있는 연차보고서

(2) 검토 및 의회보고-

- (A) 논평 및 권고-대통령은 제(1)호에 의거 제출된 보고서에 관하여 논평하고 권고할 수 있다.
- (B) 의회 보고-대통령은 당해 논평, 권고안 및 보고서를 의회내 관련위원회에 제출·보고 한다.

(o) 정부지출금의 허용-이 조항을 수행하기 위해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매 회계년도 당 200, 000달러의 정부지출금을 허용한다.

제19조(행정관리) (a) 판무관의 임무-이 부분을 실행하는 데 있어 판무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공적 또는 비영리의 사적기관, 단체에 대한 자문서비스 및 기술적 지원
- (2) 단기연수와 기술지도
- (3) 연구 및 실험의 실시
- (4) 이 부분에 의해 제공되는 기금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를 포함한 특별 교육자료 또는 정보자료의 수집, 준비, 출판, 보급
- (5) 회의에 대한 인력 및 기타 기술적 지원의 제공
- (6) 이 부분에 의해 허가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및 그 평가결과의 연도별 분석·출판
- (7)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이 부분에 의해 수행된 활동 및 장관

이 결정하는 기타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여 대통령과 의회내 관련 위원회에 제출

(b) 서비스와 설비의 이용—

(1) 총칙—관무관은 제(a)항에 규정된 바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 간에 이루어진 협정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 및 기타 공적 또는 비영리 기관·단체의 서비스와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

(2) 대가 지급—관무관은 그 서비스와 설비에 대하여 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선지급 또는 상환급으로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c) 공표—장관은 이 법 제정일 이후 120일 이내에 이 부분의 행정관리를 위한 규칙(안)을 연방 등기부에 발표·공포해야 한다.

(d) 최종 규칙—장관은 제(c)항에 의한 규칙(안) 발표후 90일 이내 당해 규칙에 관한 국민일반의 의견수렴기간 만료 후 이 부분의 행정관리를 위한 최종규칙을 공포해야 한다.

(e) 정부지출금의 허용—이 조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1991 회계년도에 1,000,000달러의 정부지출금을 허용하며 1992년 부터 1994년까지의 매 회계년도에도 필요한 상당액의 지출을 허용한다.

(f) 선지급 자금—이 부분에 의한 유용 자금을 적절히 공지할 목적으로 정부지출금 이용이 보장되는 회계년도 이전의 회계년도에 대해서도 정부지출금이 허용된다는 것을 정부지출금법에 포함한다.

제 2 장 청소년·가정을 위한 주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보조금

제25조(목적) 이 장은 주와 지방기관을 지원·촉진함으로써 재자원을 조정하고 서비스 장애요인을 감소시키며 주와 지역사회의 청소년·가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며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립법인” 이라 함은 제29조에 의해 설립된 것을 말한다.

제27조(협의 조정) 관무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진하기 위한 개발적, 예방적, 치료적 제반 청소년 서비스의 유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주와 새로운 상호 서비스계획·지원에 관한 협력협정을 맺는다.

- (1) 적절하고 안전한 물리적 공간
- (2)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 (3) 배울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취학하도록 보장하는 아동 발달의 증대
- (4) 최상의 교육기회
- (5) 고용 가능성을 증대시킬 효과적인 훈련 및 견습제도
- (6) 지역사회서비스 및 생산적 고용의 기회
- (7) 청소년을 자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자부심과 지역사회 의식을 증진시키는 광범위한 시민적·문화적 활동 및 레크레이션활동
- (8) 청소년들의 생활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한 진정한 참여

제28조(행정관리) (a) 총칙—관무관은 청소년·가정청을 통해 이 장에 의한 프로그램을

관리·운영한다.

(b) 기술지원-판무관은 이 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교육성 장관, 노동성 장관, 법무 장관, 주택·도시개발성 장관, 운수성 장관, 지역사회봉사 사무소 국장 및 적절한 연방 정부의 부처·기관의 협력과 기술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주립법인) (a) 선정-주는 다음 각호에 제기한 사항 이외에는 이 장에 의한 배정분 중에서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1) 주의 행정책임자는 판무관이 공포한 규칙에 따라서 다음 각 호로 구성되는 주립법인을 선정한다.

(A)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해 주내 각 기관의 각료급 대표자

(B) 다음 각 호의 1 가운데서 임명된 자

(1) 청소년에게 사적·비영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i) 청소년에 관심을 갖고 옹호하는 시민집단

(iii) 청소년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는 주 의회 위원회

(iv) 이 부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지도자를 포함, 청소년 연령의 지도자

(v) 상업지역의 대표

(vi)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고용된 사람의 대표

(vii) 일반 목적의 지방정부 대표

(viii) 다음 각호에 제기한 일을 위해 필요한 자

(I) 제30조에 의거하여 판무관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는

주별 계획을 개발하는 일

(II) 당해 주 내에서 주별 계획을 운영·관리하고 감시하는 일

(III) 이 법안의 목적에 관련되는 모든 주 활동을 조정하는 1차적 책임을 지는 일

(IV) 청소년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별 계획, 예산 및 정책에 대해 심의·평가하며 기관·단체·협회 또는 청소년의 욕구를 대변하는 사람에게 기술적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해 효과적이고 가시적으로 대변하는 일

(2) 제(1)호에 의해 선정된 주립법인은 다음 각 호의 I에 제기한 일을 한다.

(A) 이 장에 의해 받은 기금을 판무관이 공포한 지침에 따라서 주내에 배분하는 제도를 개발하는 일

(B) 이 제도에 따라 기금을 받는 주내 각 지역이 기금을 신청·수수할 기회가 균등하도록 보장하는 일

(C) 이 제도를 검토·평가하는 설명서를 판무관에게 제출하는 일

(D) 지방서비스 전달체계가 다음 각 호에 제기한 용도로 개발 또는 지원되도록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일

(1) 사전 결정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욕구에 부응할 목적으로 적용시킨 일정범위의 서비스를 제공함

(ii) 지방서비스전달체계는 공적, 사적, 지역사회 지도자와 청소년들

이 이 제도를 계획하는 일에 참여하는 정도에 의해서 평가되도록 구안된 것으로 지역사회에 그 근원을 두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일부분이 되는 것임

(iii) 청소년을 대신하여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간에 공동계획, 공동투자, 공동서비스 전달, 공통적인 수용과 평가 및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를 증진시키는 기타 협약 등과 같은 체계적인 협력을 실시함

(b) 기존 주립법인체-판무관은 주의 행정 책임자가 제(a)항에 기술된 당사자로 구성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의 기관간 계획 및 조정 활동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기존 주립법인체를 주립법인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주별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제30조(주별 계획) (a) 계획의 제출-주의 행정 책임자는 매 회계년도에 제33조(a)에 의한 배정분 중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주립법인이 결정한 2년, 3년 또는 4년 동안의 주별 계획을 준비하여 판무관에게 제출한다.

(b) 계획의 수정-주의 행정 책임자는 제(a)항에 의한 주 계획을 매년 수정할 수 있다.

(c) 계획의 내용-주의 행정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립법인은 청소년을 대신하여 공동계획, 공동투자, 공동서비스 전달, 공통적인 수용과 평가 및 서비스 장애요인을 감소시키고 보다 효과적인 지방 서비스전달 체계를 증진하는 기타 협약

등과 같은 체계적인 기관간 협력을 증진시키는 주별 정책이 되는 기관간 계획을 담당한다.

(2) 이 계획은 주가 취합한 다음 각호에 제기한 청소년과 그 가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정도 실제적인 자세한 정보를 포함, 주가 준비한 최근의 "청소년 실태"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지는 욕구에 입각한다.

- (A) 연령, 성별, 인종, 민족성
- (B) 청소년들의 거주지
- (C) 집없는 청소년의 발생 정도
- (D) 청소년의 가족 구성
- (E) 청소년의 경제적 상태
- (F) 빈곤 청소년의 발생 정도
- (G) 집을 떠나 보호받은 경험
- (H) 보전상태
- (I) 생활에서의 폭력
- (J) 학교와 근로에의 애착을 갖는 성격
- (K) 학교중도 탈락률
- (L) 거주 지역사회의 특성

(3) 주 내에서 기금을 분배하는 제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필요로 한다.

- (A) 각 지역은 이 장에 의해 기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기회를 균등히 갖는다.
- (B) 대중들은 당해 계획의 발전과 운영·관리에 관해 견해를 표현할 기회를 갖는다.

(4) 주립법인은 현행 제반 공적, 사적 청소년·가정 서비스 목록을 제공하며 이 법안의 목적에 전념하기 위한 주내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하고 그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현행 공

적·사적 프로그램의 범위를 결정한다.

- (5) 주립법인은 판무관이 요구하는 정보·자료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보고한다.
 - (6) 재정통제와 기금 회계절차는 보조금 또는 계약서 수령자에게 지불된 기금을 포함, 이 장에 의해 주의 행정책임자에게 지불한 연방기금의 적정한 지출과 상세한 내역설명을 확실하게 할 필요로 채택된다.
 - (7) 주립법인은 적용할 수 있는 주 계획에서 수행된 활동과 프로젝트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와 건의사항을 주의 행정책임자와 주의회에 보고한다.
 - (8) 주의 행정책임자는 이 장에 의한 기금으로 기관요원을 위한 현직연수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9) 주의 행정책임자는 제32조의 지원 서비스에 관한 필요요건을 이행할 준비를 한다.
- (d) 계획의 승인—
- (1) 총칙—판무관은 주별 계획이 제(a)항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 (2) 결함시정 통지—판무관은 주별 계획을 적용함에 있어 먼저 그 결함에 대해 정당하게 통지하며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승인하지 않거나 변경 또는 이 장에 의한 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선언하는 최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

제31조(주별 계획의 계획, 조정, 평가 및 관리) (a) 주에 대한 보조금 산정 방식—제

(b)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주 계획을 운영·관리하는 비용 가운데서 제33조(a)에 의해 각주가 사용가능한 총액은 주로 하여금 주립법인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비율을 지불하기 위한 주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 (1) 계획 준비 및 지방계획과 서비스지역에 대한 기술적 지원 대책 비용
- (2) 계획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의 평가비용
- (3) 자료수집 및 주 내의 지원 서비스의 필요에 관한 분석 비용
- (4) 제(3)호에 의해 알게된 정보자료의 보급 비용
- (5) 이 장에 의해 허가된 프로그램의 운영에 종사하는 공적 또는 비영리 사적기관, 단체의 요원에 대한 단기훈련 대책 비용

(b) 연방부담 : 연방부담금은 제(a)항에 의해 이용 가능한 총액 중 7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 비연방 부담 : 주 계획에 의한 총 지출 중 비연방 부담액의 25% 이상은 주 또는 지방의 공적 재원의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

(d) 보충적 용도 : 이 장에 의해 주가 받은 총액은 제(c)항에 의한 주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행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연방 프로그램의 필요조건을 충족하는데 그 비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장에 의해 보조금이 주어지는 목적에 쓰이는 연방, 주 및 지방기금의 총액을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제32조(지원 서비스) (a) 프로그램의 수립 -

- (1) 총칙-판무관은 제(2)호에 열거된 지역에 대한 주별·지역별 계획 및 지원 노력을 통해 알게되는 서비스 격차를 메우기 위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30조에 의해 승인된 주별 계획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한다.
- (2) 서비스 내용-제(1)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 (A) 사례 계획, 사례 관리, 수용과 평가 및 정보자료와 이송 등의 활동을 통해 효과적, 통합적이며 이용가능한 종합적인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 (B) 다음 각호에 제기한 여러 목적의 서비스
 - (i) 청소년과 가족들에 대한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의 적절하고 안전한 물리적 공간 제공
 - (ii) 집없는 청소년에 대한 과도적 생활 서비스 제공
 - (iii) 신체적 정신적 행복의 획득·유지를 위한 청소년 지원
 - (iv) 상담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가장 빈번한 질병의 발견·예방을 위한 건강진단 및 보다 나은 치료·상담
 - (v) 배울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취학하도록 보장하는 아동 발달의 증대
 - (vi) 중도탈락 예방 프로그램, 학교중퇴 청소년을 위한 치료 및 직업 교육훈련을 통한 최상의 교육기

회 증진

- (vii) 효과적인 훈련 견습제도 및 고용 기회의 제공
- (viii) 청소년을 자원으로 평가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이익과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지역사회 서비스 및 시민적, 문화적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에의 참여 증진
- (ix) 청소년들의 생활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진정한 참여의 증진
- (x)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 대한 지역사회내 가용 시설 및 서비스의 이용 촉진
- (xi)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들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거나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할 안전한 장소의 보장
- (xii) 청소년들에 대한 학대, 유기 또는 착취의 예방

(b) 보조금 총액의 제한-제33조(b)에 의해 각주가 이용할 수 있는 총액은 이 조항에서 제기하고 주별 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서비스 비용의 8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립법인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사용 될 수 있다.

제33조(정부지출금의 허용과 배당) (a) 주별계획 -

- (1) 총칙-제31조에 의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 1991년 부터 1994년까지의 매 회계년도에 필요한 금액의 정부지출금을 허용한다.
- (2) 배당방식-주는 제(3)호에 제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에 의해 매

회계년도마다 지출되는 총액 중에서 모든 주의 21세 이하 인구 중 당해 주의 21세 이하 인구의 점유비에 따라 당해 회계년도의 지출 총액과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배당받는다

(3) 예외사항- (A) 총칙-주는 제(B)호에 계기한 사항 및 제(1)호에 의한 정부 지출금의 활용성을 제외하고는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어도 300,000달러 이상을 배당 받는다.

(B) 배당제한-제(A)호에도 불구하고 구암, 버진 아일랜드, 태평양 군도의 신탁통치령, 미국령 사모아, 북마리아나 군도는 각각 적어도 75,000달러 이상을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당 받는다.

(b) 지원 서비스-

(1) 총칙-제32조에 의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 1991년 부터 1994년 까지의 매 회계년도에 필요한 금액의 정부 지출금을 허용한다.

(2) 배당방식-주는 제(3)호에 계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에 의해 매 회계년도마다 지출되는 총액중에서 모든 주의 25세 이하 인구중 당해 주의 21세 이하 인구의 점유비에 따라 당해 회계년도의 지출 총액과 동일한 비율의 금액을 배당 받는다.

(3) 예외사항-

(A) 총칙-주는 제(B)호에 계기한 사항 및 제(1)호에 의한 정부 지출금의 활용성을 제외하고는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어도 300,000달러 이상을 배당받는다.

(B) 배당제한-제(A)호에도 불구하고 구암, 버진 아일랜드, 태평양군도의 신탁통치령, 미국령사모아, 북마리아나 군도는 각각 적어도 75,000달러 이상을 제(2)호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당 받는다.

(c) 연령의 결정-각 주의 21세이하 청소년의 수는 판무관이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에 입각해서 판단한다.

제 3 장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 보조금

제41조(약칭) 이 장은 “1990년 가정자원 및 지원법”으로 약칭한다.

제42조(목적) 이 장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지역사회중심 서비스를 통해 가정이 존속하고 번창할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가정조성 및 양육의 증진
- (2) 가정이 지역사회 내의 공적·사적 자원을 이용하도록 가정을 지원·증진
- (3) 양육능력의 강화·보강을 위한 자원 네트워크 창설
- (4) 다른 지역사회 자원과의 긴밀한 연계 및 중복성의 배제

제43조(정의) 이 장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판무관-“판무관”이라 함은 청소년·가정청 판무관을 말한다.
- (2) ‘지역사회 이송서비스’-“지역사회 이송서비스”라 함은 보건복지, 정신건강 보호, 고용력 발전과 직업훈련, 기타 사회서비스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해주는 추수 서비스를 포함한 제반 지역사회자원을 얻도록 가정을

-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핵심 서비스-“핵심 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A) 부모들의 양육기술 획득과 아동발달, 자녀의 행태, 대응법 등에 관한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적 지원서비스
 - (B) 아동의 욕구 또는 결점을 평가하며 제공가능한 특별 지원 방법을 알아내기 위한 조기 아동발달 검사
 - (C) 출향원조서비스
 - (D) 지역사회이송 서비스
 - (E) 추수서비스
- (4) 추수서비스-“추수서비스”라 함은 제반 필요서비스를 가정이 받도록 하며 그것이 효과적으로 되도록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 (5) 선발기관-“선발기관”이라 함은 주 행정책임자가 지방의 가정자원·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할 책임 기관으로 지정한 매개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존의 주립기관 또는 다른 공적, 비영리의 사적 조직체를 말한다. 이러한 기관은 다른 주 및 지역사회 중심기관과 함께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능력과 가족자원 지원 프로그램의 계획과 관리·운영에 부모의 참여를 약속하는 것을 명시한다.
- (6) 기타 서비스-“기타 서비스”와 “기타 지원서비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A) 아동 양호, 조기아동 발달 및 관여 프로그램
 - (B) (동기상담과 기술훈련을 포함하는) 고

용력 개발 서비스

- (C) 형식적 가정교습, 문자해독 훈련 및 학위취득 서비스 등의 교육 서비스
 - (D) 영양 교육
 - (E) 약물남용 상담 및 처방 의뢰
 - (F) 생활 관리 기술훈련
 - (G) 기초보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의뢰
 - (H) 동료 상담, 위기조정, 가정폭력상담 및 그 서비스의 의뢰
- (7) 출향원조서비스-“출향원조서비스”라 함은 부모들이 (가정방문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가정자원 지원 프로그램 활동을 알고 이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뜻한다.
- (8) 장관-“장관”이라 함은 보건후생성 장관을 말한다.

제44조(보조금) 판무관은 제45조와 제46조에 의거 주내 기존의 보건, 정신건강, 교육 고용 및 훈련, 아동복지 및 기타 사회서비스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지방의 가정 자원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계획입안 보조금) (a) 승인-판무관은 주에 대해 제49조(b)에 제기한 바에 따라 사용 가능한 총액 중에서 주와 지방의 가정지원 및 자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그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입안 하는 일을 지원하는 계획입안 보조금을 수여한다.

(b) 보조금 총액-이 조항에 의한 보조금의 총액은 주 및 지방의 현행 프로그램, 대상 인구의 규모 및 판무관이 정하는 바의 기준을 고려하여 150,000달러(또는 1회이상 보조

금이 주어지는 주에서는 해마다 15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 발의하는 가정자원·지원계획의 내용에 따라 주어어야 한다.

(c) 기간—이 조에 의한 보조금은 1년간 주어지며 1년에 한해서 추가될 수 있다.

(d) 신청서—이 조항에 의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주는 다음을 각호에 제기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무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적힌 지원서를 일정시기에 소정의 양식으로 준비하여 관무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관무관이 제(e)항에 제기한 기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 (2) 제48조에 제기한 기관간 계획을 주가 수행하도록 보장
- (3) 보조금이 제46조(d)에 제기된 바의 제반 요소가 포함되는 가정자원·지원프로그램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
- (4) 가정자원과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 기관과 부모를 다수 관련시키는 성공적 방법 또는 장애 요소를 포함하여 입안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주도록 하는 보장

(e) 기준—관무관은 이 조에 의해 각주에 대한 보조금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주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입안과정에 기존의 가정자원·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다는 주의 약속
- (2) 현행의 가정 자원프로그램의 수용력, 가용자원 및 주의 필요지역
- (3) 주의 가정자원과 지원프로그램의 일반 목적과 범위

(4) 가정자원과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가 계획한 재정적 약속의 수준

(5) 주의 가정자원과 지원프로그램의 입안 과정에서 부모의 관여를 위한 주의 계획

(6) 계획 입안과정에서 기관간 관여를 위한 주의 계획

(7) 가정자원·지원프로그램을 포함, 가정에 대한 종합서비스 조치에 대한 실제적·규정적 장애요소를 감소시키려는 주의 약속

제46조(운영 보조금) (a) 승인—관무관은 주에 대해 제49조(a)에 제기한 바에 따라 지출되는 총액 중에서 지방의 가정 자원·지원프로그램을 수립·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운영보조금을 수여한다.

(b) 보조금 총액

(1) 총칙—이 조항에 의해 수여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지방의 가정지원·자원프로그램을 수립·확산하는 데 소요되는 주의 평균비용의 80%와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제한—이 조항에 의해 수여되는 보조금은 주 계획에 대한 관무관의 평가와 제안된 프로그램의 범위, 제(d)항에 의해 제출된 신청서에 적힌 바 서비스 대상 인구에 입각하여 4,000,000달러를 초과하거나 1,500,000달러 이하가 되지 않아야 한다.

(c) 기간—이 조에 의한 보조금은 1년간 주어진다.

(d) 신청서—이 조항에 의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주는 다음 각호에 제기한 사항을 포함하여 관무관이 필요로하는 정보가 적힌 지

원서를 일정시기에 소정 양식으로 준비하여
 관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주 행정책임자가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하는 책임을 지는 선발기관을 선임하도록 하는 보장
- (2) 주의 가정자원과 지원프로그램의 제안된 범위, 서비스대상 인구, 프로그램의 운영방식, 이들 프로그램이 다른 지역사회 서비스 및 공적기관과 관련되는 방식 등에 대한 설명
- (3) 지방보조금 수여에 있어서 저소득 지역사회에 봉사 프로그램과 새로운 부모 봉사 프로그램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보장
- (4) 주 프로그램이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장
- (5) 제48조에 제기한 바와 같이 주가 맡게되는 기관간 계획 입안에 대한 설명
- (6) 지방 가정자원과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방의 기관간 계획 입안과정에 대한 설명
- (7) 이 장에 의해 필요로 되는 바의 핵심 서비스, 프로그램에 의해 제공되는 기타 지원서비스 및 이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
- (8) 주 기부금 및 주 프로그램을 위한 연방과 주 기금의 지출을 자세히 밝히는 주 예산 명세
- (9)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간부훈련과 그 수의 적절성, 프로그램이 장차 확산되고 그에 따라 서로 부합되지 않는 상이한 욕구들이 나타나는 방식 등을 확실하게

하는 등 주가 받은 지방 보조금을 활용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

- (10) 지방 프로그램의 발전, 정책 구안 및 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부모의 관여에 대한 지침의 설명
 - (11) 주내의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12) 주가 프로그램을 계획·입안하고 수행하는 데에 부모가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설명
 - (13) 지방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발전에 대한 훈련, 기술지원 및 기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 (14) 가정자원 및 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가정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조치에 대한 실제적·규제적 장애요소를 줄일 수 있는 주의 조치에 대한 설명
- (e) 기준-관무관은 이 조에 의해 각주에 대한 보조금 수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 (1) 제48조에서 제기한 기관간 계획에 따라 주가 가정자원과 지원프로그램의 실행을 위해 마련한 운영 계획
 - (2) 지방의 프로그램 발전, 정책 구안 및 이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부모의 관여에 대한 지침의 수립
 - (3) 연방 및 주의 기금지출을 위한 예산 및 공적·사적 조직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재원의 재정적 약속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의 능력
 - (4) 관무관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기타 제반요인

제47조(지방프로그램 필수요건) (a) 총칙-제

46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주는 보조금을 다음 각호에 제기한 용도에 사용한다.

- (1) 보건, 교육, 고용훈련, Head start, 아동 복지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를 지방의 가정 욕구를 결정하기 위해 제공할 책임이 있는 부모와 공적·사적 비영리 지방기관 등이 관련하게 되는 지역사회 계획의 입안과정을 포함하는 지방 가정자원·지원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프로그램을 지방별로 관리·운영할 적절한 지역사회를 찾아내는 일
- (2) 핵심 서비스, 출향원조 서비스, 지역사회 이송 서비스, 추수서비스 및 직접 또는 다른 지방기관과의 계약, 협약을 통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제48조(기관간 계획 입안) (a) 수립—주는 이 장에 의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주 내에 수립된 가정자원·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래밍을 지도하며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주 계획을 개발·감독하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기관간 계획을 수행한다. 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가정자원·지원프로그램에서의 부모 및 예비부모
- (2) 주 정부의 사회적 서비스, 보건, 교육, 정신건강, 고용 및 경제개발기관의 대표자
- (3) 상업지역사회의 대표자
- (4) 주의 가정자원, 지원프로그램이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
- (5) 가정자원·지원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지방의 지역사회 대표자
- (6) 지방정부의 일반목적 대표자

제49조(지출의 승인) (a) 총칙—이 장을 수행하기 위해, 1991 회계년도에 60,000,000달러의 정부지출금을 허용하며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매 회계년도에도 필요한 상당액을 허용한다.

(b) 계획입안보조금—장관은 제(a)항에 의한 매 회계년도의 정부지출금중에서 제45조에 의한 보조금 총액의 20% 이내에서만 이 용할 수 있다.

(c) 제한—주는 이 장에 의해 수여되는 주 단위 활동 보조금 중 10%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